

티케이 엘리베이터 협력업체 윤리지침

1. 지속 가능한 협력업체관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

TK Elevator(TK Elevator AG 및 모든 계열사를 의미)에서는 지속가능성을 비즈니스 업무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우위의 그룹으로 전세계에서 원자재, 부품류와 서비스를 구매하며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제공으로 고객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협력업체는 우리의 지속성 전략을 함께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협력업체는 지속 가능성 전략에 통합된 일부입니다. 모든 구매과정에서 경제적, 프로세스적 및 기술적 범위와 필수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 하여야 합니다. (인권, 근무환경, 반 부정행위 및 환경보호)

어떠한 제품, 서비스, 시장, 구역 또는 프로세스를 막론하고 우리의 업체평가기준은 항상 원가, 품질, 안정성, 혁신 및 지속가능성입니다.

티케이 엘리베이터의 협력업체들은 해당국가의 법규, 글로벌 그룹의 원칙, 티케이 엘리베이터가 제시한 협력 업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더욱이 협력 업체 자체의 적당한 준수 프로세스를 체계화 하는 것을 추천하며, 해당법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협력업체 이행사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협력업체의 모든 계열사들이 이러한 원칙과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해당 협력업체 윤리지침서의 목적에 따라, "계열사"는 당사자들 중 한 명이 투표登記 자본금에 50% 이상의 직접 또는 간접 참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인간과 노동의 권리

티케이 엘리베이터는 협력 업체에서 전 직원이 해당국가법규 내에서의 기본권리가 보장받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나아가서는, 우리는 협력 업체가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 of Human Rights)과 국제노동조합(ILO)에서 제시하는 근로자 보호기준을 숙지하고, 각 국가의 해당법규와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티케이 엘리베이터는 협력 업체가 제 3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을 받아들임으로써, 역효과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2-1. 미성년자 고용

티케이 엘리베이터는 협력 업체에서 임의 형식의 미성년자고용을 금지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2-2. 차별 철폐

티케이 엘리베이터는 협력 업체에서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회와 대우를 제공할 것을 요청드리며 협력 업체에서 고용, 승진, 임직원 교육기회에 관해 임의 형식의 차별화를 금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협력 업체에서는 근로자의 성별, 나이, 인종, 국적, 소수 민족 및 사회적 신분, 민족, 성향, 장애 또는 종교적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2-3. 강제노동

티케이 엘리베이터는 협력 업체가 해당 국가 법규에 따라 근로자 협의회, 단체 교섭 단위 또는 기타 직원 대표를 구성하고 단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2-4. 단체 구성의 자유

티케이 엘리베이터는 협력 업체에서 해당 국가법규 내에서의 근로자조직 또는 대표자의 단체교섭을 보장해줄것을 요청드립니다.

2-5. 근무시간 및 수당

티케이 엘리베이터는 협력 업체에서 해당 국가법규에서 규정된 근무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며 또한 합법적인 수당을 근로자가 보장받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2-6. 분쟁 광물

티케이 엘리베이터는 협력 업체에서 적용 가능한 분쟁 광물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제품이 한 개 또는 한 개 이상의 분쟁 광물을 포함하였다면, 티케이 엘리베이터는 협력 업체에게 용광로까지의 공급망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3. 직업 안전 및 보건 대한 이행

티케이 엘리베이터는 협력 업체에서 해당 국가 법규내의 근로자들의 직업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이행을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나아가서, 모든 협력 업체는 직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관리 체계(예: OHSAS 18001 준수)를 만들고 유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협력업체 에서는 근로자들의 직업상 사고와 질병 방지를 위하여 직원 교육을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4. 환경보호에 대한 이행

티케이 엘리베이터는 협력 업체에서 환경보호 대한 해당 국가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협력 업체는 물, 에너지 및 자재 소모와 폐기물 및 온실 가스 및 기타 오염 물질의 배출을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 지속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예: ISO14001)함으로써 환경파손을 극소화하고, 환경보호를 일상화해야 합니다.

5.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행

5-1.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금지

티케이 엘리베이터는 협력 업체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절대 금지하며, UN 및 OECD 경제법규중 부정부패 유관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특히 협력 업체의 전 근로자 및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수주를 목적으로 티케이 엘리베이터의 근로자 또는 해당부서에 임의 이익이나 특별대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5-2. 초대 또는 선물

티케이 엘리베이터는 협력 업체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한 임의 초대권이나 선물을 티케이 엘리베이터의 근로자에게 증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증여행위가 있을 경우는 그 규모나 내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예: 저가의 가치 및 해당 지역 비즈니스 관례에 부합) 동시에 업체에서 티케이 엘리베이터 임직원에게 임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5-3. 이익충돌에 대한 예방

협력 업체와 우리와의 거래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준에 의해서만 결정 가능합니다. 임의 사적인 원인으로 인한 업체결정은 초기에서부터 금지되어야 하며, 이는 지인이나 기타 친분이 있는 주체에도 해당됩니다.

5-4. 경쟁의 자유

티케이 엘리베이터는 협력 업체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경쟁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업체는 임의 독점금지법규를 위반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우세한 시장위치를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5-5. 자금 세탁

티케이 엘리베이터는 협력 업체에서 자금 세탁금지에 관한 해당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임의의 자금 세탁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6. 협력 업체의 거래 업체와의 이행

티케이 엘리베이터는 협력 업체에서 위에 제시한 내용을 하청업체와 공유하고 하청업체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티케이 엘리베이터의 협력 업체는 하청업체가 위 준수 및 이행사항(인권, 근무환경, 반부패, 환경보호)를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제품을 얻고 합법적인 제품 확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티케이 엘리베이터 협력 업체 이행 및 준수 사항에 대한 이해

우리는 티케이 엘리베이터 윤리지침서에 따라 협력 업체의 준수 및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이며 협력 업체는 적어도 자체평가를 년 1 회이상 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협력 업체를 방문하고 협력 업체의 현장에서 지속가능성 심사 수행하거나 자격이 부여된 제 3 자에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임명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평가와 같은 심사가 제 3 자에 의해 이루어질 때, 협력 업체는 연간 매출액이 100,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이 감사에 대한 모든 비용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감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5,000 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티케이 엘리베이터는 심사 결과들에 대한 전체 리포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위 규정과 기준을 위반시 티케이 엘리베이터의 윤리지침서에 따라, 티케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협력 업체의 중대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되며 티케이 엘리베이터는 해당 업체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티케이 엘리베이터는, 협력업체가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받은 후에도 명백히 티케이 엘리베이터의 윤리지침서에 명시된 기준과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속가능성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구하고 실행하는 것에 거부하는 것에 한해 일부 혹은 모든 거래를 즉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협력 업체는 이 문서에 명시된 원칙과 조항을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회사명 및 주소	날짜	이름 및 직책	서명